

# Mobility Legal Updates

2025. 2. 19.

---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법령 및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으로 고객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린에게 있으며, 출처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CC BY-NC).

---

이른바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필두로,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추가 입법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EDR) 의무부착 제도와 더불어, 급발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의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는 등 자동차 안전장치에 관한 제조사나 판매자의 의무를 더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자동차 산업에서도 재활용 등 친환경 이슈는 향후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발의 또는 소관위 심사 중인 주요 법안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sup>1</sup>

---

<sup>1</sup>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 뉴스레터는 매달 두 번 발행되고 있으며, 이슈와 법령 동향을 번갈아 다루고 있습니다.

## 1. 자동차 안전 관련 법안 발의 동향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 부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715,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자동차에 전방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법안은 2025. 1. 22.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자동차 제작 또는 판매 사업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부착할 의무를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만큼, 위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2. 자동차 산업 관련 법안 발의 동향

### **침수자동차 관련 수출 허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302, 염태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침수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그러나 새로 발의된 위 법안은,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침수자동차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위 목적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만 위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사업이 취소나 정지당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 1. 7.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제한된 목적 하에서 침수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의 수출이 가능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시장이 보다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녹색기업 지정 요건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352,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법 제16조의2 제1항), 환경표지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또한, 위 “제품의 환경성”에 관하여 기업은 부당한 표시·허위 광고행위를 하면 안됩니다(법 제16조의10).

그러나 새로 발의된 위 법안은,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사업수행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새로 고려하도록 하고, 위 사항의 개선을 이룬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거나 환경표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자회사를 통한 경우도 포함)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등 사업자는 위와 같이 새롭게 확장된 영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광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25. 1. 8.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녹색기업 지정을 노리거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 또는 사업수행에 관하여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고해야 하며,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사업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사용후 배터리 근거 마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573,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사용후 배터리에 관하여 “전기차 등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 12. 17.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 신설 정의를 근거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확대**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시행 등 배터리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2024. 12. 26. 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 뉴스레터), 소비자가 전기차를 알아보고 구매하는 단계에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래와 같이 의원 입법이 추가 발의되었습니다.

- ①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의안번호 6880, 문금주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제작·판매자들에게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모델, 제조사 및 사용이력 정보(사용이력 정보 공개는 재사용된 구동축전지에 한정)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4. 12. 24.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별치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하게 부담시키는 법안인 만큼, 법안 통과 여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관련 정보 고지 의무**(의안번호 6560, 이연희 의원 등 19인 발의):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전기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1항)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 12. 17.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구매자에게 배터리 관련 정보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